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파산학교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protecting against poverty &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umanrights

대구 중구 동인 4가 13-2(2F) T) 053)290-7474

<http://humanrights.jinbo.net> e-mail: leftline2@hanmail.net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파산학교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protecting against poverty &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umanrights
대구 중구 동인 4가 13-2(2F) T) 053)290-7474
<http://humanrights.jinbo.net> e-mail: leftline2@hanmail.net

글 싣는 순서

→ CONTENTS

뉴스로 알아보는 금융피해자의 현주소	06
왜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금융피해자인가	11
파산면책제도에 대한 작은 강의	21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 작성법	32
불법채권추심, 바로알고 당당히 대응하자!	50

금융피해자 VS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라는 말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사라지게 되고 대신 금융채무 불이행자라고 사용되게 된다. 하지만 용어만 사라졌을 뿐 실제 신용불량자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간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는 이들을 금융피해자라 이해하고 칭한다.

신용불량자 혹은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금융피해자의 용어 사용에 있어 그 차이는 채무의 원인과 그 해결의 지점에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

신용불량자 혹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개인적 책임이라는 금융자본과 정부의 이해와 관점이 녹아 있으며 따라서 채무 또한 개인 책임이라는 주장과 통한다.

반면 금융피해자는 서민·노동자들이 금융채무를 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과, 금융채무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추심기관들의 협박과 폭력에 의해 반인권적 삶을 살아야 하는 금융채무자들의 삶에 주목하는 관점이다. 또한 금융채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금융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주장하는 의견과 통한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는 금융피해자 및 면책자의 인권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는 전국적인 시민사회단체 공동연대체이다.

우리는 금융피해자

장 경 기

우리도 알겠네. 이제는 알겠네.

너희의 썩은 냄새 이제는 하늘에 진동하여, 이제는 알겠네.

너희는 걸레들, 교활한 탐욕의 손,

동침한 정부의 더러운 얼굴들,

새가슴에 차하게만 살았던 우리도 이제는 알겠네.

이 시진 새벽, 쓴 소주 쓰라린 가슴으로야 알겠네.

신용불량이라 죄인인줄만 알았는데 알고보니 내가 바로 금융피해자일세

우리 잘못인줄만 알았는데 알고보니 내가 바로 금융피해자일세.

우리 잘못인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 신용 원흉 저기 있네.

알고보니 선량들

너희가 불량이라 부르는 이들.

만나보니 정 깊고 사람좋은 선량들, 서로 만나보니 알겠네.

무슨 큰 대역죄이기에 이 좋다는 신용사회에 빚의 노예냐.

무슨 변란이기에 천만이 금융피해냐.

처자식 죽음으로 가는 순간 막노동판 떠돌았던 김씨야.

어쩔거나 어쩔거나.

카드빚독촉에 신경쇠약, 피말리며 두려누운 수미 엄마.

어쩔거나 어쩔거나.

에해야 에해야 이 풍진 세상

천만 금융피해 고통속에 신음해도 뻔뻔한 저놈들.

알고보니 진짜 날강도, 처 죽일 놈들은 저기 있네.

에해야 에해야 이 풍진 세상 모여나 보세.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네.

그대로 뒀다간 우리의 방치된 삶,

신음도 못하고 죽어가네. 자식까지 노예되네.

모이세 모이세 모여서 우리도 할말은 하세.

김씨야 이씨야 한탄만 말아라.

새가슴에 정씨야. 속으로만 앓지마라.

우리는 불량자가 아니라 금융피해자.

서로 만나 보니 이제는 진상을 알겠네.

모여라 모여라 모여나 보세.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네.

따지세 따지세 낱낱이 따져나 보세.

뉴스기사로 알아보는 금융피해자의 현주소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동향>¹⁾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잔액(가계대출잔액+판매신용잔액)은 98년말 183조 6천억원이었던 것이 99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3. 9. 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439조 9,481억원(2003년말 금융기관 대출잔액 692조 2,571억원의 63.5%)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에서 가계대출 잔액은 409조 5575억원이고 판매신용잔액은 30조 390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 9. 현재 1 가구당 가계신용잔액은 2,931 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부채를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다. 2004년 현재 가계 대출 규모는 465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계 대출에 비례하여 1999년 신용불량자가 200만 명 정도였던 것이 2001년 245만, 2002년 263만, 2003년 327만, 급기야 2005년 중반에는 현재 4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 경제생활의 궁핍은 생계형 범죄를 양산하고 있는 바, 쌀·우유·옷 등 생필품을 훔치는 등 거의 충동적 초범인 생계형 범죄자들로 2003년 강도는 전년대비 32.7%로 급증하였다. 절도의 경우도 2003년 대비 11.3%증가하였는데²⁾ 경제적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이 빈곤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임.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에 처해지는 경우가 1998년도에 5천 여명에서 2003년도 11,000명으로 증가하여 100% 증가하였음³⁾

- 그동안 신규 신용회복 신청자중 월평균 소득 100만원이하 극빈층 신용불량자 비중은 지난 2003년 16.9%(2월)→32.9%(12월), 2004년중 36.1%(3월)→46.9%(6월)→48.8%(9월)→51.9%(11월)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2005년 4월에 60%대에 이르렀다. 월 소득 100만원이하의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수'는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한국은행, 2002년중 가계신용동향 및 2003년 3/4분기중 가계신용동향

2) 경찰청 2003년도 범죄통계표에서 인용

3) 법무부 통계

전문가들은 “올들어 공식적인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신용불량자 문제는 여전히 ‘진행중’이고 심각하다”며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화일보 2005-06-28)

- 심상정의원은 2005년 10월 4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정부는 국회가 신용불량 용어를 폐지하고 지난해 12월 362만명을 끝으로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2004년 신불자 수를 추계하면서 3월에 세금체납자 15만명을 신불자 범주에서 제외했고 이어 5월~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2만 1000명의 사망자를 통계수치에서 제외하는 등 추계방식을 변경해 신불자 규모를 2004년 한해에 27만 1000명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는 올해 신용불량자를 금융채무연체자로 바꾸면서 기준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 초과 연체 혹은 50만원 미만 2건이상 연체자로 변경했기 때문에 금융채무 연체자수는 과거 신용불량자수보다 더욱 적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신불자 수치를 독점하면서 규모와 기준범위를 축소해 신용불량자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탈락자도 금융채무연체자로 재등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내일신문 2005-10-04)

-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올 들어 가계의 채무 부담능력이 개선되지 않고 저소득층의 열악한 신용상태도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가계의 금융부채는 532조 6000억 원, 빚 상

환능력 지표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월 말 현재 49.3%에 머물렀다. 이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25~30%에 비해 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그만큼 빚 상환능력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정부가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지만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기대만큼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한은의 평가다. 실제 올 4월 말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때 신불자가 경제활동인구의 약 16%인 360만명에 이르렀고, 올 4~9월 생계형 채무재조정 신청자 수는 고작 8만7000명에 그쳤다. (세계일보 2005.11.1)



자료: 한국은행

- 실제로는 파산했지만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비공식 파산자가 최대 112만명(지난해 전체 신용불량자 수의 31%를 차지,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에 비해 무려 93배에 이르는 수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만 하지 않은 잠재 파산자만도 최대 1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비공식 파산이나 잠재파산에 빠진 개인들이 시차를 두고 개인파산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내년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올해 3만 여명, 내년에는 7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파산신청자중 20% 정도는 가족파산. (이데일리 2005-12-29)

- 2일, 민주노동당의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각 시·도당이 2005년 상담한 3428명의 채무자들을 통계화한 결과에 따르면 과중채무자들은 일반적으로 약 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40대로 일용직·비정규직 등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1239명(36%)이 되는 등 부채 규모와 소득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이 드러났다. 채무 중대 사유는 생활비 1020명(48.7%), 자영업 실패 417명(19.9%), 법인사업 실패 240명(11.5%) 등이며, 주식 투자 실패나 낭비 등 소위 '도덕적 해이' 때문에 빚을 진 경우는 전체의 2.2%인 46명이었다. 부채 규모는 1000만원 이하 154명(4.5%), 1000만원~2000만원 945명(27.6%), 2000만원~3000만원 948명(27.7%), 3000만원~5000만원 897명(26.1%), 5000만원~1억원 397명(11.6%)이었으며 1억원 이상은 87명(2.5%)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별로 볼 때 대부분의 과중채무자들은 건설업 등 일용직 714명(20.8%), 보험 모집인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525명(15.3%), 자영업자 323명(9.4%), 영업용택시 86명(2.5%), 노점상 46명(1.3%), 전업주부 107명(3.1%)였다.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1265명(36.9%), 100만원~150만원 559명(16.3%), 150만원~200만원 239명(7.0%), 200만원~250만원 52명(1.5%), 250만원~300만원 43명(1.6%), 300만원 이상 29명(0.9%)이었으며, 실업자이거나 전업주부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도 1241명으로 전체의 36.2% 차지했다. 재산의 경우 임대보증금 등을 합쳐 1000만원 이하가 833명(36.9%)이었고, 1000만원~2000만원 219명(13.9%), 2000만원~3000만원 92명(5.8%), 3000만원~5000만원 51명(3.2%), 5000만원~1억원 51명(3.2%)이었으며,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무상거주 등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도 243명(15.4%)에 달했다. (데이터뉴스 2006-01-02)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고금리 피해 신고는 하루 평균 1.5건. 1월에는 55건, 2월에는 38건으로 두 달동안 93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대부업 등록문의와 단순상담을 제외한 전체 상담 330건 가운데 가장 많다. 협박이나 물리력을 동원해 빚을 받아내는 불법채권추심 피해신고는 각각 26건과 38건이었다.



고금리 피해신고는 대부업법이 시행(2002년 10월)된 직후인 2003년 1, 2월 309건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2004년 같은 기간에는 96건, 지난해에는 68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들어 다시 늘었다. 사금융피해상담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이 요구하는 이자는 평균 220~230%. 특히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챙기는 이자는 해마다 높아져만 가고 있다. 2001년 이후 상담센터에 신고된 대부업체들의 이자는 최저 186%에서 최고 222%까지다. 이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2002년 197%에서 2003년 211%, 2004년에는 253%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229%로 조금 떨어졌지만 법적 상한선의 347%에 달한다.

금감원 비제도 금융조사팀 관계자는 “하루 1%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업체도 비일비재하고 최고 1000%가 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속에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더 음성화되고 있다”며 “그들이 감수하는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자율도 높아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내외신문 2006-03-10)

- 제도 금융권에서 신용 대출을 받지 못해 사금융시장으로 가는 금융

소비자가 전체 금융 소비자(3337만8000여 명)의 9.4%에 달하는 31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대부업체 모임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이들 가운데 십중팔구는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해 2년 내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한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며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로 등록될 확률은 80% 이상"이라고 말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관리하는 신용 불량자(현재 추정치 300만명 안팎) 명단에 머지않아 포함될 '잠재적 신용 불량자'가 현재 전국적으로 300만명에 달하는 셈이다.

전국에도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같은 이른바 '서민 금융기관'이 많다. 저축은행은 110개, 신용협동조합은 1051개나 된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들은 서민이 주고객이라면서도 시중 은행 못지않게 까다로운 대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신용도가 취약한 서민들로선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조선일보 2006-05-16)

왜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금융피해자인가

1. 한국의 사회 양극화! 빈곤의 끝은 어디인가?

1) 한국 사회의 증가하는 빈곤률

<표 1> 절대 및 상대빈곤률 추이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절대빈곤률	4.1	3.6	7.6	8.7	6.3	5.4	4.4	5.5	5.3
상대빈곤률	8.6	8.9	10.5	10.7	9.8	9.8	10.3	10.9	11.8

* 절대빈곤률은 정부의 최저생계비기준으로 하며, 상대빈곤률은 근로자증위소득의 50% 기준
자료 : 낭기철외 「빈곤정책의 전환모색-사회적 배제를 넘어」 새세상을 여는 진보정치연구소, 2005

<표 1>에서 2002년을 기점으로 절대빈곤률과 상대빈곤률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 빈곤층이 716만 명이 넘는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빈곤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2006년에는 700만을 훨씬 넘는 빈곤층이 존재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2) IMF 이후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 수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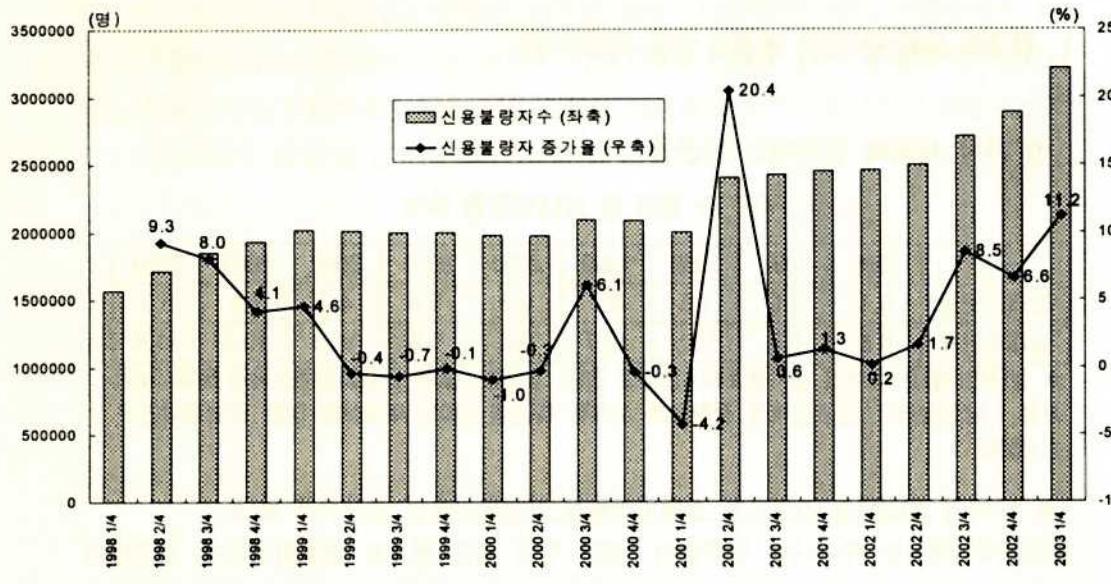
2002년 중반기 이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신용불량자 수는 2002년 3월 말 약 246만 명, 2002년 12월 말 약 290만명,⁴⁾ 2003년 1월 약 274만여명, 2003년 4월 말 약 300만명, 2003년 9월 약 350만, 2004년 4월 383만명에 이를 때까지 증가한다.⁵⁾ 이후 매우 느린 속도로 감소하여 2004년 12월 말에는 신용불량자 수가 362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용불

4) 한편 2002년 7월 이후 사용되고 있는 30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불량자를 제외한 신용불량자 수의 추이는 (02.06) 2,259(천명) → (02.09) 2,455(천명) → (02.12) 2,635(천명)이다.

5) 2004년 3월의 신용불량자 수 감소는 국세체납자를 신용불량자 통계에서 제외하고 사망자를 기록에서 삭제하는 등 기술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현상이므로 신용불량자 수가 감소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4년 5월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량자 개념의 폐지로 인하여 2005년 이후에는 신용불량자 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 않으나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5년 10월 말 현재 종래의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7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314만명으로 감소하였다⁶⁾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명칭을 변경, 채무금액이 30만원 초과 혹은 30만원 미만 3건 이상이었던 신용불량자의 기준이 50만원 초과 혹은 50만원 미만 2건으로 기준범위가 축소되면서 과소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분기별 신용불량자 추이: 1998~2003



3) IMF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와 임금의 감소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비정규직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는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임시일용직규모를 살펴보면 1996년 43%, 1997년 46%, 1998년 47%로 임시일용직의 규모가 50%를 넘지 않지만,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52%로 임시일용직의 규모가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비정규직 노동센터에서는 통계청의 조사를 분석하여 비정규직의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표 2>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시기인

6)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과제」, 재경부 보도자료(2005. 11.9)

2002년 전체 임금노동자중 56.6%를 차지하는 등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표 2> 비정규직 규모(각 해 8월 기준) (단위 : 만명,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임금 노동자 (100)	1,322	1,362	1,414	1,458	1,497
정규직 (임금 노동자 대비)	582	592	630	645	657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대비)	737	770	784	813	839
	(44.3)	(43.4)	(44.6)	(44.3)	(43.9)
	(55.7)	(56.6)	(55.4)	(55.7)	(56.1)

자료 : 2001년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2002년 이후 자료는 한국비정규직 노동센터 자료

비정규직의 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표 3>에서와 같이 이들의 임금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는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로, IMF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증가는 바로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5년의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3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공부조대상이 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일하는 빈곤층이 확대되는 심각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3> 정규직 대비 전체평균임금과 비정규직 임금 수준 (단위: 만원,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정규직 임금 (100)	157	169	182	201	211	220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대비 수준)	84	89	96	103	109	112

자료 : 한국비정규직 노동센터 자료

4) IMF 이후 가계수지 악화와 함께 증가하는 저소득층의 금융채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비정규직의 증가와 경기침체, 신용불량자의 증가 등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표 4>에서 고소득층의 금융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소득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금융자산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증가율 (단위 :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분위	12.8	-5.4	-7.4	-4.4	-7.8	-7.5	-4.8	-12.8	-14.3
2분위	15.1	4.7	3.5	3.9	3.3	6.0	2.2	3.3	3.4
3분위	15.5	6.9	5.3	6.2	6.9	8.1	4.4	5.5	6.0
4분위	14.2	9.0	8.9*	11.2	11.0	12.0	4.9	5.6	7.5
5분위	9.9	13.4	13.3	13.0	13.9	14.3	6.6	6.9	8.0

주 : 1분위는 소득순위 하위 20%를, 5분위는 상위 20%를 의미

자료 :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출처 : 홍경식, 「가계의 금융자산부채, 부채부담능력 및 부채조정」 주택금융월보, p11, 재구성

<표 5>에서 가계금융부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경우 전년과 대비하여 10.1% 감소하였는데, 이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자들이 퇴직금 등으로 가계부채를 감소시킨 반면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들이 증가하면서 가계금융부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금융부채액은 2003년 530조원, 2004년은 555조원으로 다소 증가폭이 작아지다가 2005년 596조원으로 전년대비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대책의 시효성이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5> 가계금융부채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금융부채	296.9	293.0	329.3	398.7	505.1	530.0	555.8	596.0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10.1	8.5	12.4	21.1	26.7	4.9	4.9	8.8

자료 :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

출처 : 홍경식, 「가계의 금융자산부채, 부채부담능력 및 부채조정」 주택금융월보, p11, 재구성

2000년 8월 이후 경기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수출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 심화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9년부터 신용카드 규제완화가 IMF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저소득층 빈곤의 문제가 신용카드로 잠시 수면밑에 있다가 신용카드규제와 함께 곱을대로 곱아버린 부채증가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을 홍경식(2005)은 저소득층의 금융부채 증가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현상, 정부의 신용카드사용장려정책⁷⁾의 실패와 금융기관의 금융정책의 미숙에 기인한

것이고, 고소득층의 금융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추이는 저금리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2.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들의 현주소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통해 파산 후 면책된 3,133건 중 1,016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 자료를 근거로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의 현재 상황들을 살펴보자.

1) 대출 사유 및 채무증대 사유는?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저소득층의 신용불량 원인은 언론등에서 떠들어대는 것처럼 투기나, 낭비가 아닌 고액의 병원비와 자녀교육비, 생활유지를 위한 생계형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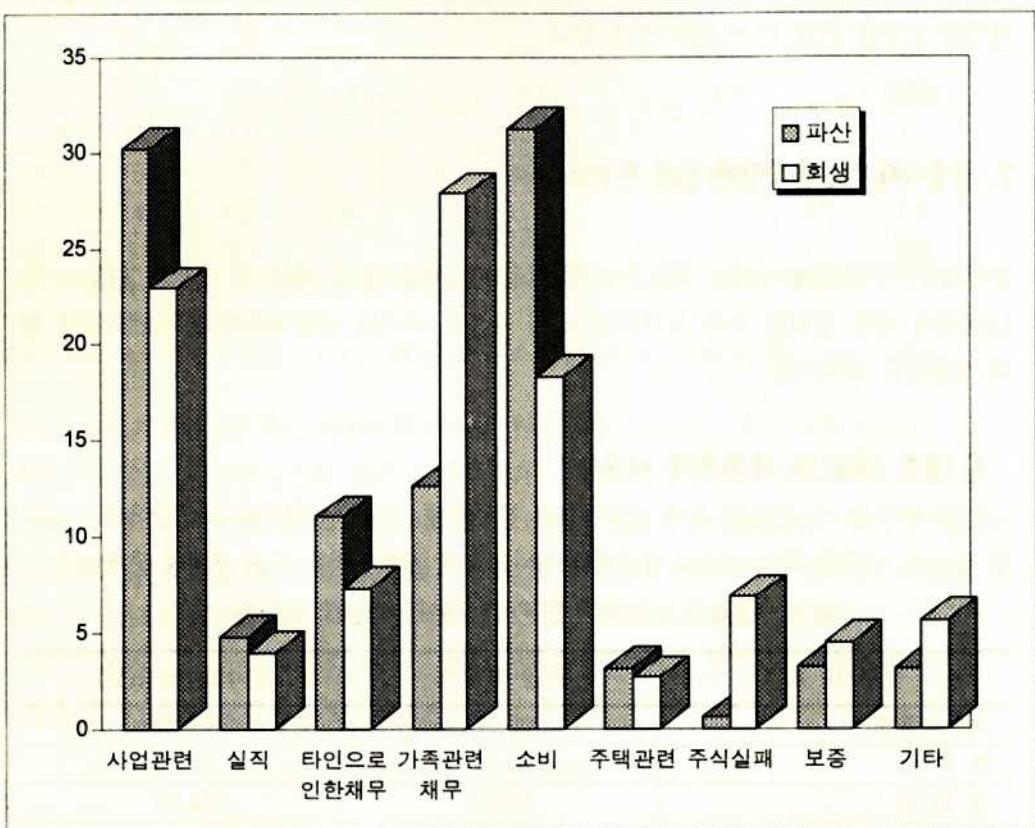
<표 6> 대출금 사용처에 따른 채무분포 (단위: 십만원, %)

사용처	평균 채무액	건수의 비중(%)
기초생활비	80.18	13.57
병원비	94.11	54.70
교육비	86.40	14.87
주택 전세금 또는 구입	154.89	9.13
카드 돌려막기	72.22	7.70
기타	131.93	0.03
계	-	-

채권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게 된 원인도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산자중 채무증대사유는 소비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업관련, 타인으로 인한 채무 순 이였으며, 투기목적인 주식은 매우 미미한 수준 이었다.

7) 1999년 5월 현금서비스 한도(70만원) 폐지, 동해 9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2000년 1월 카드영수증 복권제 실시 등

[그림 2] 채무증대사유



<표 6>, [그림 2], <표 7>등에서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가 대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채무가 증대된 이유는 도덕적 해이와는 거리가 멀다.

<표 7> 과소비 및 사치경험 여부 (단위: 명, %)

	인원	비중
도박여부	없음	1,014
	있음	2
사치성소비여부	없음	897
	있음	119
국외여행	없음	913
	있음	103
카드수 평균(장)		5.1

3.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는 왜 생겨났고 왜 증가했을까?

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노동력 유연화로 인한 소득감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MF 이후 전체노동자중 비정규직의 확대와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수준이며 4인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신용정보에 따르면 40대의 평균 신용점수가 가장 낮다고 한다. 이는 대출금액이 많고 신용카드 사용도 활발하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빌린 돈을 제때 못갚고 연체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전체 평균점수가 내려가는 것이라고 동아일보(2006년 5월 10일자)는 기사화하고 있다. 땀흘려 일한 임금소득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고 빚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나아지지 않는 살림은 빚을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2)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회사의 카드사용 남발정책

2000년과 2001년 폭발적으로 증가한 신용카드 대출과 그에 따른 부실채무 증가 또한 신용불량자 급증의 중요한 원인이다. 1999년 현금서비스 관련 규제 철폐로 대표되는 신용카드 관련 규제 완화를 계기로 신용카드회사들의 경쟁이 시작되고, 신규카드 발급 및 신용카드 이용액과 채권 잔액의 증가 등 무분별한 카드사들의 정책들을 내놓게 하였다. 결국 신용카드 사용액은 2000년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할부구매보다는 신용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현금서비스를 중심으로 신용카드사용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1999년 말 13.6조원에 불과하던 신용카드 대출 잔액⁸⁾은 2002년 9월 말 5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격히 팽창하였다.

3) 이자제한법 폐지로 인한 과도한 고금리로 채무 급증

법정 최고 이자율은 현재 대부업법에 의해 연 66%가 최고 상한선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까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리를 25% 이하로 제한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이 법이 폐지돼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들은 무한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서민들이 '금리 폭탄'에 만신창이가 되자 지난 2002년 10월 '대부업법'을 제정해 이자율을 무려 66% 까지 가능하다. 신용카드의 경우도 25~28%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나 연체의 경우 30%를 넘고 있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2002년 197%에서 2003년 211%, 2004년에는 253%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229%로 조금 떨어졌지만 올해는 법적 상한선의 347%에 달한다고 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경우, 그리고 더 이상 제도금융권에서 대출

8) 신용카드 대출은 현금서비스, 대환대출, 카드론을 포함한다.

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서민들의 경우 사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사금융의 이러한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의 채무는 더욱 급증할 수밖에 없다.

4) 정부의 안이한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 대책

개인워크 아웃제도나 배드뱅크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등 민간기구를 통해 운영되는 제도로 개인워크 아웃의 경우 최저생계비⁹⁾ 정도를 생활비로 인정받으면 나머지 소득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제도이다.

심상정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드뱅크는 8개월, 신용회복위원회는 1~2년 만에 프로그램 탈락자율이 모두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배드뱅크의 경우 60%대에 달하는 연체율을 고려하면 2년 안에 절반이 프로그램에서 탈락되고, 종착년도인 8년 까지 프로그램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 8] 민간프로그램 참여 신용불량자 탈락 현황 (2005)

	2월	5월	8월
배드뱅크	7.3%	15.1%	21.3%
신용회복위원회	-	12.7%	18.6%

출처: 심상정의원실, "정부신용불량대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5.10

발표시기	주요내용
2004.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파산법과는 별도로 개인채무자 회생법 제정(04. 9월부터 시행) •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편 (05. 4월 28일부터 시행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하고, '고용'을 목적으로 한 개인신용 정보이용을 제한)
2005. 3	<p><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수급자중 신용불량자- 기초수급에서 벗어날때까지 채무상환유예, 유예기간 이후에는 장기분할상환 • 청년층 신용불량자- 채무상환 일정기간 유예 (최장 2년) • 영세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상환유예 (최장 1년), 경기회복시기까지 채무상환부담완화,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지원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만원 이하 급여생활자의 월급에 대해 압류금지(가령 240만원 미만일 경우 120만원 초과부분만 압류/05. 7. 28부터 시행)

9) <2006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¹¹⁾>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6(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2005(원/월)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89,140원씩 증가(7인 가구 1,731,522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용불량 대책은 거의 대부분이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기초수급자나 청년층 신용불량자에 대해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금 탕감이 함께 진행되지 않는 한 이들의 미래 삶까지 저당 잡히는 것에 불과하다.

5. 금융피해자, 우리의 희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1) 과도한 고금리를 끊어내자

최고상한(법정 최고금리)을 연 25%로 제한하는 고금리제한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¹⁰⁾

2) 파산법의 개정과 미성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채무탕감을 간소화시키자

파산법이 금융피해자들에게는 유일하게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로 인정받고 있으나 반인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전문직, 교사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제한이나, 보증인에 대한 면책이 불가 등 반인권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실업자 등에게 신용카드를 남발한 금융자본의 책임이 분명한 채무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지 않고 탕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 정부의 예비자금으로 금융채무 채권 매입을 통해 전액탕감 할 수 있다.^{11)¹²⁾}

3) 개인신용정보법을 강화시키자

현재 개인신용정보법에 의하면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외

10) 가까운 일본의 경우 대부업에서 조차 원금이 10만엔 미만일 경우 연 20%, 원금이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일 경우 연 18%, 원금이 100만엔 이상일 경우 연 15%를 법정최고이자율로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리는 무효로 하고 있으며, 연 29.2%를 넘는 이자계약은 계약자체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11) 2003년 개인부실채권을 캠코(자산관리공사)와 외국계자본(모건스탠리, 론스타)이 인수한 가격은 채권가의 10~20% 수준이었음. 또한 2005년 현재 개인부실채권의 시가는 채권가의 4~5%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므로 정부에서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채권가의 5~6% 미만으로 인수할 수 있음.

12) 심지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과 참여연대 조차도 금융피해자들과 관련해 '1,000만원 이하 부채는 원금 탕감을 해 주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1,000만원 이하를 탕감해 준다면 약 6조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예전 제일은행 인수과정에서 정부가 돌려 받지도 못하고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규모다

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의 경우¹³⁾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재는 거의 전무하다.

추심기관의 채권의 하도급으로 인한 반인권적인 불법추심이 난무한다.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들은 불법추심으로 인하여 심리적·정신적 공황상태로 인하여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불법추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4) 금융채무의 문제를 근본적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자

금융채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당장에 삶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 언제든지 또 다른 금융채무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장에 금융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IMF 이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증가세, 자영업자의 몰락 등 금융채무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변화 없이는 제2, 제3의 신용불량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채무를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5) 금융피해자, 스스로 연대하자

우선 금융피해자들의 금융채무의 문제가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알고 금융채무자간의 자발적 네트워크형태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금융피해자 스스로의 요구와 고민을 함께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동대응과 공동실천이 중요하다.

1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32조 벌칙조항)

파산면책제도에 대한 작은 강의¹⁴⁾

변호사 김현익(대구시민공익법센터)¹⁵⁾

I. DEBT FREE AND SHAME FREE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 아버지의 가까운 친구는 잘못된 재정적 결정을 하여 파산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한때 자부심 있고 성공적인 학자, 운동선수, 사업가였던 이러한 남자가 가구전부를 저당잡하고 빈맥주상자위에 앉아있거나 아이처럼 자신과 가족에게 안겨준 창피와 부끄러움으로 아이처럼 울고 있는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는 이웃의 부랑자요 세상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오늘날 파산은 재정적 불행에 대한 더할 나위없이 훌륭한 해결책으로 인정받는다.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법적 수단이다. 최근 8년간에는 소비자신용권리를 위한 전국연합에 따르면 9초마다 한개씩 파산을 위한 장부철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12명 중 1명의 미국인이 빚에 짓눌려 있다. 파산장부철이 1986년 이전보다는 이제 두 배 이상이 된다.¹⁶⁾ 소비자신용권리를 위한 전국연합의 도움을 찾는 사람의 70%는 화이트칼라이다. 파산신청을 한 사람의 거의 60%는 베이비붐세대이다. 파산신청자는 압도적으로 자기집을 소유한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독신여성이고 최근에 이혼한 경우가 많다.

파산신청자가 초라하고 남을 등쳐먹는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들의 좀 정확한 유형은 평범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교육받은 중산층 소비자이다. 이들은 공격적이고 영악한 신용마케팅기술에 훌라당 넘어가 자제력을 잃고 부지불식간에 재정적 영혼을 빚이라는 악마에 굴복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파산이 과거의 주홍글씨를 더 이상 새기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보다는 종종 자신들의 통제를 넘어서

14) 통합도산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2005) 자료집에서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15) 자세한 것은 www.civilhome.com

16) 미국 소비자도산사건의 변동추이를 보면 1998(1,398,182명), 1999(1,281,581명), 2000(1,217,972명), 2001(1,452,030명), 2002(1,539,111명), 2003(1,625,208명)으로 영업자도산을 포함한 도산사건 중 소비자도산비율이 97%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개인파산사건이 1998(105,468명), 1999(123,915명), 2000(139,590), 2001(160,741), 2002(214,996), 2003(242,849)로 전체도산사건 중 약 9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개인파산접수현황을 보면 2000(329), 2001(672), 2002(1,335), 2003(3,856), 2004(12,317), 2005(38,773)이며 개인회생의 경우 2004. 9~2005. 3.까지 18,349건이 접수되었다.

는 환경에 의하여 빚을 안지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마음을 괴롭히는 선택이다.

교육받은 중산층 미국인들이 신용사기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연간순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자채무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카드회사는 맹렬하게 카드를 발급하고 미국인들은 카드라는 최소한의 바람(wind)과 가장 적은 소득의 붕괴에도 흔들리는 가상의 집에 살고 있다. 우리 아버지친구가 일찍이 겪은 경험은 우리에게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원래 무모한 낭비자나 빚을 빼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오히려 법원의 도움이 없다면 채무의 악순환에 타락하는 상황에 여전히 머물러있게 된다.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든지간에 미국파산법은 정직한 채무자가 처음부터 새로 출발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파산법원의 도움으로 우리아버지의 친구는 재정적 구렁텅이에서 내려서 자신의 경력을 소생시키고 좋은 가정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결국에는 편안하게 은퇴하게 된다. 파산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자기관리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이다. 법원과 법은 당신에게 그러한 길을 보여줄 것이고 당신의 변호사는 편안하게 안내할 것이나 당신 스스로 해쳐가기 시작해야만 한다.

미국인에게 파산에 대한 핵심적 특징은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이라는 원칙이다. 이는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재정적 재탄생의 기회를 맞이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자리에 복귀하여 파산법은 당신에게 새로운 재정생활을 시작할 기회를 주도록 고안되었다. “파산시스템은 불행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해방되어 정직한 채무자를 숨이 막히게 될 정도의 빚진 상태의 무게로부터 구제하고 그로 하여금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허용하도록 입안되었다.”[Wetmore v. Markoe(1904)] “파산법의 중심적 목적은 어떤 지급불능의 채무자가 이전에 존재하는 빚으로 인한 압박과 낙담으로 제약받지 않고 그들의 업무를 정돈하고 채권자와 화해하게 하고 유망한 분야에서 앞으로의 노력으로 삶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보도록 일정한 사법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Grogan v. Garner(1991)]¹⁷⁾

II. 파산일반론—fresh start principle

의의

17) JAMES P.CAHER & JOHN M.CAHER, DEBT FREE!, HENRY HOLT AND COMPANY · NEW YORK(1996), 1-4면

파산면책제도는 신청당시에 가진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내어 놓고 지급불능임을 선고받아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적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서 장래에 벌어들이는 소득을 자기의 것으로 보유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제도입니다. 즉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후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하면 더 이상 채무자는 기존의 채무를 원칙적으로 전부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현재의 재산을 보유하면서¹⁸⁾ 채무이행계획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승인하여 장래에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채권자에게 일부의 변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안정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¹⁹⁾

정책적 의미

독일법계는 전통적으로 비면책주의를 고수하나 영미의 파산법에서는 면책주의를 채택하여 오늘날 대형소비사회에서 금융자본의 과잉 금융공여의 결과로 발생한 개인의 파탄은 종래의 “성실한 그러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를 과잉융자의 희생자로서 보아 폭넓게 이를 구제하려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 사람들은 파산을 신선한 새 출발(fresh start)이라고 표현합니다. 채무자가 선택하는 순간에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채권자에게 내 놓고 그때까지의 채권을 면제 받는 제도인 파산은 인위적으로 인생을 나누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선진 사회에서는 어느 체제나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1960년대부터 파산법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파산의 요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5조에서는 보통파산의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을

18) 그 대신 채무자가 장래에 취득하는 소득으로 변제해야 할 총변제액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가치총액보다 더 많아야 하는데 이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the Best Interest of Creditors' Test)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일부 변제에 투입하거나 가압류적립금을 재산의 투입으로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9)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들이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인데 협약가입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5억원이하의 연체등록채무자 및 최저생계비이상소득자인 경우에 8년이내 원금상환을 하면 이자만 면제해주는 것이다. 다만 상각채권에 한해 원금의 1/3까지 감면도 가능하다.

할 수 없는 때”를 들고 있으며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지급불능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냉정한 판단을 요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지금의 소득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빼고 저축 가능한 금액을 구해서 이것을 이자, 원금 나가는 것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저축이 이자 지출보다 적으면 채무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는 새로운 소득으로 이자를 충당하고 원금을 줄여가지 못하는 이상, 당장은 버티다니 하더라도 지급불능으로 평가됩니다. 월평균 수입과 연수입총액/ 월평균지출과 연지출총액/ 월평균이자지불액과 년이자지불총액을 비교해보면 대략 답이 나온다. 물론, 장래에 소득이 파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몇 년간의 소득 추이를 보면, 자신이 처한 상태에 대하여 대략이나마 수치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냉정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회생과의 비교

이것은 파산의 변형된 형태로 이해됩니다. 채무자가 제출하는 조정안에 대하여 다액 채권자의 동의 대신에 법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현재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파산을 뒤집어 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파산에 있어서는 파산신청 당시에 가진 재산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내 놓습니다. 그 대신에 채무자는 장래에 벌어 들어는 소득을 자기의 것으로 보유 합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적 인격으로 태어나는 원칙적인 형태입니다. 이에 비하여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과거의 채무자가 청산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채무자는 장래에 벌어 들어는 소득으로 과거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류의 사람은 청산형 파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① 파산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직을 면하는 공무원과 변호사, 의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자들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차별의 근거로 할 수 없게 하는 선진제국과는 달리 아직 우리나라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공무원이나 특정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다소의 희생을 무릅쓰고 현직의 유지를 희망하는 공직자와 전문직업인에게는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② 현재 금융비용의 과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결손을 보고 있지만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는 있으나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금융비용을 영업이익에서 생계비를 공제

한 금액 이하로 낮추어 줌으로써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③ 소규모 주택의 보유자와 전세권자입니다. 사업자와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청산형 파산으로 가더라도 노숙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전세금을 유지하면서, 그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는 돈을 장래에 나누어 변제함으로써 청산형 파산보다는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II. 파산면책제도에 대한 구체적 지식

1단계—30세정도에 3000만원인데 채무갚기가 만만찮은 경우

5000만원정도의 금융빚과 사채가 있는데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경우에 이를 한방에 훌훌터는 방법은 현행시행중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통합채무조정법)에서는 파산면책신청제도가 있다. 파산원인은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부채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계속적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통상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는(직업이 있어도 소득이 별루라서 겨우 생계하는데 빠듯한 경우) 30세정도에 1500만 원이상의 채무를 파산면책신청대상이라고 보면 되나 나이가 많다면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거나 기초수급자인 경우 더 적은 액수도 가능할 수 있다. 반대로 실무는 독신보험설계사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권하고 있듯이 일단 직업이 있는 경우는 파산면책이 실무상 만만찮으므로 개인회생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파산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한도 없이 파산원인이 있으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으로 채무전액을 탕감받게 되는 것인데 다만 자기가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전부 내놓아야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존의 보험계약은 해약하고 자동차도 처분한 후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도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가능하나 한도가 있는데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다. 변제계획을 5년간 수행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다.²⁰⁾

20) 개인워크아웃은 주로 제1금융권의 채무만 5억원의 한도내에서 최장 8년정도 매월 일정액으로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만 면제되는데 최근에는 원금도 일부 탕감하는 것 같다.

2단계—일단 접수하세요.

파신신청은 소송(suit)이 아니라 청원(petition)이다. 권리분쟁에 대한 복잡한 다툼이 아니라 법원에 파산법에 의한 보호(bankruptcy protection)를 요청하고 법원이 절차적인 심사를 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통하여 양심채무자(honest debtor)가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지급불능이 된다고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설령 파산원인이 없거나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더라도 개인회생등 다른 채무조정제도로 가면 되므로 더욱 그렇다. 특히 기초수급자, 모자가정(부자가정), 70세이상인 사람은 법원에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가지고 가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지정변호사를 통하여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다.

2006. 4. 1부터는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신청시 면책신청을 간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고 채권자에 대한 송달에 문제가 없게 되고 특별히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5개월만에 면책결정이 나오게 된다.

서류는 요즘 채권자들이 군소리 없이 협조적으로 발급해주고 있다. 전화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많이 바쁜 채무자는 서류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 자료송부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접수하기 전에 정말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그것은 연고로 맺어진 보증인과의 관계이다. 채무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존속하므로²¹⁾ 특유의 의리문제로 고민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채무자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나 연대보증인은 서명하는 순간에 별개의 복수채무가 되므로 실제로는 채무자의 파산면책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는 있지만 역시 어려운 문제이다.

3단계—나도 면책받을 수 있나

현행법은 재산은닉²²⁾, 고의적 카드강²³⁾,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등 편파적 변제행

21) 통합채무조정법 제567조 (보증인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²⁴⁾, 지나친 과소비행위, 도박등으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고(통합채무조정법 제564조 제1항), 재량면책(법 제564조 제2항)과 면책절차중의 강제집행등을 금지중지(법제557조)를 인정하여 파산면책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채무자생생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면책율은 2000(50.7%), 2001(75.3%), 2002(87.2%), 2003(95.9%), 2004(98.6%), 2005(99.3%)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접수건수 중에서 처리건수가 차이가 나고 처리건수에서 통계를 낸 점과 기본적인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자체를 취하하도록 권유하는 사정이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면책율은 좀 낮다고 보여지지만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감안하여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전부면책이 아닌 일부면책이 드물게 결정되는데 보통은 고액의 채무자가 신청한 사건에서 채권자측에서 카드깡 등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써 20%내외에서 일부면책불허가결정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투자로 발생한 채무가 문제되는 데 면책불허가를 한 사례와 일부면책한 사례도 있지만²⁵⁾ 그러한 채무의 비중이 작고 그것역시 채무변제의 방법으로 우발적으로 했거나하면 재량면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낭비”의 해당여부는 신용카드 20개를 이용하여 특급호텔 출입, 소위 명품브랜드의 구입 등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²⁶⁾이지 일반적인 서민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검소하지 못한 소비행위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22) 제650조 제1호(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로써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 후 채무자인 자식이 상속포기한 후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에 장애가 되는 것이고 특정채권자에 대한 의무있는 변제는 반대금부와 현저한 균형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면책불허가사유에 비해 재량면책의 인정을 엄격히 하고 있다.

23) 제651조 제1호(현저히 불이익 조건의 채무부담 또는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에 해당하는데 실무상 채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고이율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나타나거나 신용카드로 냉장고, 세탁기등 고가의 가전제품 또는 상품권 등을 구입함과 동시에 할인매각함으로써 현금을 유통하는 경우에 본 호에 해당할 수도 있다.

24)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물적담보제공, 연대보증행위, 변제, 대물변제, 상계등을 하는 것으로 무효취소되거나 시효에 걸려 변제할 의무가 없는데도 변제하거나 당초 약정되지 아니하였던 대물변제나 기한전의 변제를 말한다.

25) 대법원 2005.6.27.선고 2005마387결정

26) 대법원 2004. 4. 13.선고 2004마86결정

4단계—파산면책으로 혹시 불이익이 없는지

파산면책 후 채권자은행으로부터 다시 신용을 얻으려면 사실상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님)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사실상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경제생활에서는 그것이 잘 쓰이지를 않을뿐더러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시까지 불과 2-3 개월정도만 등재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통합채무조정법에서는 파산자의 거주제한, 파산자의 격리, 통신제한등의 제한을 폐지하였고 최근개정법은 “누구든지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차별적 취급의 금지규정(법 제32조의 2)를 신설하여 파산법에 의한 법의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또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취업자격상의 불이익조항이 있는 총 18개의 폐지법안중 법무사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법을 본회의를 통과하였다.²⁷⁾

그런데 강제집행, 압류가 걱정이 되는데 면책신청에 따른 강제집행금지중지규정의 신설로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의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책결정확정까지기간에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중지된 강제집행도 속행된다.

5단계—최소한의 재산을 좀 건질 수 없는가

파산학교강의 중에 “파산은 친정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황금숟가락도 내놓고 면책을 결정을 받아서 fresh start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강의 듣는 누군가가 질문하기를 “몽땅 다 내어놓으면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말이지요”라고 하여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정직한 채무자의 처지를 십분 이해한다.

우리 통합채무조정법은 이러한 채무자의 생존의 고민을 외면하지 않고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다. 통합채무조정법은 소액임차보증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법 제383조 제2항)

27) 그리고 현재 사립학교교원의 파산선고로 인한 당연퇴직조항(사립학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1항 제2호)은 위헌제청결정이 되어 올해 안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구지역은 1400만원의 소액보증금과 최대 720만원까지의 6개월간 생계비에 대하여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본인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의복, 침구등 압류가 금지된 동산과 120만원 이하의 급여채권, 공무원(사립학교교원)의 퇴직금 전액과 연금(국민연금)도 보유가능하다.

6단계—개인파산절차의 흐름

대구경북지역에 생활하는 채무자는 대구지방법원에 신청접수하면 80%는 신청서류와 소명자료만을 검토하여 채무자심문 없이 파산선고결정을 하나 나머지 약 20%정도에 대해서는 채무자심문결정이 내려진다.²⁸⁾ 이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는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고 채무자의 재산부채상태 및 부인대상행위의 존부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채무자에게는 심문기일 출석통지를 한다. 대부분 1회심문으로 보통 5분을内外로 이며 처분할 재산이 있거나 면책불허가사유를 사실상 심리한다. 대부분이 파산선고결정을 하지만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음에도 이용함이 없이 면책을 목적으로 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의 남용에 해당되어 파산신청이 기각결정이 날수 있다. 통합채무조정법은 동시신청과 간주면책신청을 인정하여 별도로 면책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법원은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면책심문기일을 결정하여 공고 및 송달한다. 심문기일은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04호에서 오후 2시나 3시부터 열리는데 순서대로 8명씩 조정실에 입장하여 채권자송달여부와 보정, 의문점에 대한 설명을 하며 대부분은 시시할 정도로 별것이 없다. 출석한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하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절차참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만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어 있으면 바로 면책허부결정을 할 수도 있다. 보통 이의신청은 구체적인 면책불허가사유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막연히 채무면탈, 도덕적 해이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의견청취절차를 열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그리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한달후에 면책결정공고를 하고 채권자가 14일내에 항고가 없으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채무자는 책임이 면제되므로 만일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청구는 기각된다.

28) 대체로 ① 채무액이 고액인 경우 ② 개인 채권자가 많은 경우 ③ 채무가 비교적 소액으로 파산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 ④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심문을 거친다.

그러나 조세채권, 벌금, 채무자가 공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횡령금),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손해배상(음주운전사망사고),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면책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에는 악의가 아닌 경우에는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실수로 깜박 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체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7단계—개인회생제도의 매력

파산면책제도의 보충적인 제도로서의 미국과 달리 한국의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파산으로의 진행을 미리 예방하여 건전한 생활인으로 연착륙하도록 하는 절묘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을 제외하고는 개인회생신청이 파산신청보다 높은 경향이다.

특히 신청당시 급여소득이 상당한 화이트칼라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완만히 재조정하거나 파산선고시 직업상 제한을 받는 공무원, 의사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채무를 안정적으로 조정해나가는 장점이 있다.

또 파산절차의 경우 과다낭비, 카드깡 등의 사유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특정 개인회생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채무가 연체될 필요도 없고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폭넓고 최저 변제액이 총 채무액의 3-5%이상이면 인가가 가능하며 변제기간도 5년에 그쳐 채권자의 권리도 배려하지만 채무자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제도이다. 다만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현실적인 능력이 요청되므로 신청당시 막연히 주관적 판단으로 파산신청대신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잘못을 해서는 안된다.

금지증지명령신청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조세체납처분등을 금지 및 중지할 수 있고 급여, 퇴직금에 대한 전부명령도 개인회생절차의 인가시에 인가이후부분은 실효되어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채무자의 퇴직금의 1/2와 공무원의 퇴직금전액은 재산가치에서 제외되어 그 부분만큼은 변제계획상 변제투입금액이 사실상 줄어들 여지가 많아졌다.

IV. 파산시대와 공익법운동

2004. 1. 29.부터 2. 26.까지 금감원의 의뢰로 실시된 정직한 채무불이행자 3,919명에 대한 심층전화인터뷰에서 약 19%만이 채무재조정 없이 자력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63%는 채무재조정을 받아야만 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2%는 채무재조정을 받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하다 응답하였다.²⁹⁾

파산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96.8%가 가장 낮은 소득 1-2분위층에 속하며 이것은 채무상환압박에 직면하면서 경제활동자체가 위축되고 소득 획득능력도 감소한 결과가 되풀이되는 것으로 보인다.³⁰⁾ 파산 건수 최하위소득층이 86.7%로써 평균채무가 8천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하위빈곤층에 해당하는 과중채무자들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① 사법을 통한 통합채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② 광범위한 상담 및 법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과중채무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문제로 환원하여 공익법운동(public interest law movement)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재에도 민생정치에 관심이 있는 민주노동당(경제민주화운동본부)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파산지원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이른바 파산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중채무자들에게 파산면책제도를 통한 인간존엄권과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회복시켜주고 나아가 파산면책제도의 진보적 법개혁을 위하여 지금 고민을 시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도 이웃들에게 파산면책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법원의 보호를 받아서 새출발 할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29) 주로 이현욱변호사, 개인채무자회생및파산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개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특별법(안)제정을 중심으로-, 개인채무자회생및파산특례법제정토론회(2005. 7. 19), 6-8면 참조

30) 유의선, "금융채무로 인한 빈곤의 실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토론회자료집), 10면 참조

【양식 1-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인 지

2,000

신청인(채무자)

성명 : 홍 ○ ○ (한자: 洪 ○ ○) (주민등록번호 : 6400101 - 0000000)

주소 : 대구시 남구 대명동 00-00 (우편번호 : 000 - 000)

거소 : (우편번호 : -)

본적 : 대구시 북구 산격동 000-000

연락처 : 휴대전화(000-000-0000), 집전화(053-530-0000), e-mail(@hanmail.net)

신청 취지

1. 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3. 파산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을 파산자로 (하고,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하며, 파산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 서류

1. 호적등본 1부
2.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3. 진술서(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포함) 1부

2005 . 9 . 1

신청인 홍 ○ ○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파산사건번호	
면책사건번호	
배당순위번호	
재판부	제 단독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는 관련 서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거나 관할 법원에 가시면 관련서식의 인쇄물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형화된 서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서식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말미에 작성연월일과 신청인의 성명을 쓰고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날인하는 도장은 꼭 인감도장을 쓰실 필요는 없고 막도장을 새겨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조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우선권 있는 채무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면 일반 채권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후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 1-2】

진술서

대구지방법원 귀중

신청인 흥 ○ ○ (인)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가계의 수입·지출은, 별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의 각 기재와 같습니다.

1. 본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 학력

1985년 2월 14일 □□대학교 (졸업 중퇴)

(2) 과거 경력

1990년 7월 1일부터 2000년 5월 30일까지(자영, 근무)	직장명	○ 보험(주)	직위	사원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7월 30일까지(자영, 근무)	직장명	●●●	직위	대표
2001년 9월 1일부터 2004년 10월 1일까지(자영, 근무)	직장명	●●●	직위	대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 본인의 과거 경력은 해당란에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란에서는 도박여부, 과도한 낭비여부, 도산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과다한 채무를 얻었는지 여부, 편파변제 여부를 주로 살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1) 슬롯머신, 경마, 경륜, 포커 등 도박행위를 한 경험 (있음, 없음)

▷ 어떤 도박을 하였는지 ()

▷ 도박을 한 시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도박을 한 횟수 및 금액 1개월 평균 ()회 정도, 평균 ()정도

(2) 과거 자신의 월수입의 반 이상이 소요되는 호텔, 콘도, 골프장, 고급 음식점에 다닌 경험 (있음, 없음)

- ▷ 어떤 곳에 갔는지 ()
- ▷ 간 시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간 횟수 및 사용금액 1개월 평균 ()회 정도, 평균 ()원 정도
- (3) 과거 5년간 국내·해외여행 경험 (있음, 없음)
 - ▷ 여행 횟수 및 사용 금액 합계 ()회 정도, 총액 ()원 정도
- (4) 과거 2년간 50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경험 (있음, 없음)
 -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등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5) 과거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매각, 입질등)을 한 경험 (있음, 없음)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처분 시기 및 방법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6) 채무자가 도박이나 낭비로 파산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도박 또는 낭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파산 신청시에 특별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인은 도박이나 낭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고 체크합니다. 도산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과다한 채무를 얻었는지와 관련해서는 흔히 돌려막기나 카드깡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돌려막기나 카드깡을 한 내용이 다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채무초과가 된 경우에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 매우 만연해 있기 때문에 돌려막기 자체를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카드깡의 경우에도 돌려막기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이므로 최근에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7)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 (있음, 없음) (처분한 재산, 처분시기, 받은 대가, 그 사용처를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8)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로 고소되거나 기소된 경험 (있음, 없음)

- ▣ 채무자가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보유재산을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조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위 편파변제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도산상태에서 편파변제를 하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여 법원을 설득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도산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그 재산을 채무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거나 조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우선권

있는 채무에 충당하였거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 (9)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험 (있음, 없음)
 - 년 월 일경 ()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
 - 그 파산선고에 이어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 년 월 일경 () 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음
- (10) 과거에 개인채무자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있음, 없음)
 - 년 월 일경 () 지방법원에서 개인채무자회생 인가결정을 받음
 - 그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 년 월 일경 () 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음
- (11) 과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등을 이용한 경험 (있음, 없음)
 - 년 월 일경 ()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재조정을 받음

▣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를 이용하신 경험은 파산 및 면책절차와는 무관하므로 사실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 (12) 이번 항목은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영업 중 상업장부의 기재
 - 정확히 기장하였다. 부정확하게 기장하였다.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 ▷ 영업 중에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업가로 매각한 사실 (있음, 없음)
 - (언제 무엇을 매입원가의 몇 %로 할인판매를 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개인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영업 중 상업장부를 정확히 기재하였다고 적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업장부를 적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적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그리고 영업 중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업가로 매각하였다면 이것은 재산상태를 고의로 악화시킨 것이 되어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파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이상으로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을 기재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대부분 '없음'으로 체크하시는 경우가 보통이고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드린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있음'으로 체크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전문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채권자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채권자와 채무지급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 (있음, 없음)

- ▷ 그 결과 합의가 성립된 채권자수 ()명
 - ▷ 합의에 기하여 지급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매월 지급한 총액 1개월 평균 ()원 정도
 - ▷ 지급 내역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소송 · 지급명령 · 압류 ·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 ▷ ()지방법원 ()지원 사건번호()호 상대방()
▷ ()지방법원 ()지원 사건번호()호 상대방()
▷ ()지방법원 ()지원 사건번호()호 상대방()

4. 채무가 증대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무엇을 구입하였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별첨과 같습니다. (47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 채무가 증대된 경위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및 경위에 관하여는 진술서 양식에 적을 칸이 부족하므로 별지를 사용하여 자세히 내용을 적으셔야 합니다.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라는 제목으로 A4용지 3-4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과거부터 시간 순으로 적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부분은 채무자가 왜 새 출발의 기회를 얻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기는 부분이므로 채무자의 과거의 재정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첨부된 경위서 예시문을 잘 읽어보신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위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금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부터 매월 얼마 정도의 금액을 어떠한 사정 하에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첨과 같습니다. (48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6.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 (있을, 없을)

(있다면 채무발생의 시기, 원인, 금액,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 ▣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는 없음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전 1년 이내에 이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새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면책불허가 사용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식 1-3】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

-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일람표와 별도로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나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꺼번에 하시는 경우에는 채권자일람표로 채권자명부를 대신하므로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 일람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일람표에 고의로 기재를 누락하시게 되면 누락된 채권자의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채무자(신청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 준 사람이 있다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주채권자 다음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채권의 발생일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신용카드와 같이 계속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채권의 발생일자를 신용카드를 최초로 사용한 날부터 최후로 사용한 날까지로 기재하시고, 최초 채권액은 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였을 때 남아 있던 원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의 주소

- 채권자의 주소는 최근주소로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채권자로서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자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순번	채권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비고 (우편번호)
1	(주)□□은행 (□□카드)	서울중구 남대문로2가 00	02-000-0000	02-000-0000	100-000
2	△△카드(주)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00	02-000-0000	02-000-0000	100-000
3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00	02-000-0000	02-000-0000	100-000
4	김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	02-000-0000	02-000-0000	100-000
5	□□신용보증	서울 서초구 우면동 00	010-000-0000	02-000-0000	100-000

채권자 일람표를 작성할 때에는 채권자의 주소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는 파산신청 당시의 채권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거래 은행에서 신용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 신용카드사가 거래은행과 별도로 존재한다면 신용카드사의 주소를 기재하셔야 하고, 은행이 신용카드업까지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본점이나 거래지점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 양도통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의 주소를 기재하셔야 하고, 대부업체나 사채의 경우에는 이사 등으로 채권자의 주소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파산신청 당시의 주소를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소 기재가 부정확하면 파산절차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를 기재할 때 '00 이불집' 등으로 상호나 별칭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채권자의 정확한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개인이라면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상호는 괄호 안에 넣어서 기재하셔야 하고, 채권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정확한 법인명과 법인의 주소, 대표자까지 적으셔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법인명과 주소, 대표자 등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 채권자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채권자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서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고 기재하시고 채권자의 전화번호나 채권자의 직장주소 등 채권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 조세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있더라도 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이므로 채권자 일람표와 채권자 주소란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현재의 생활 상황란에 따로 적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란에 적으시면 됩니다.

재산 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셔야 합니다. 재산목록의 있음 없음란에 체크를 하시고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하며 양식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순서대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 먼저, 다음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재산이 있는지 ✓하고, 「□ 있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기재바랍니다. 이 양식을 파일형태로 이용할 경우 아래 표 중에 「□ 있음」에 ✓한 부분만 출력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모두 「□ 없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표 다음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6. 매출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1. 최근 2년간 재산처분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2. 예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7. 퇴직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2. 최근 2년간 받은 임차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3. 보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8.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3. 이혼재산분할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4. 임차보증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9. 자동차 오토바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4. 상속재산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5. 대여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0. 기타재산 (주식, 특허권, 귀금속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 현금 : 금액 (원)

2. 예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고 (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고 (원)

☆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 예금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파산신청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와 최종 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의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3. 보험(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회사명() 증권번호() 해약반환금 (원)

보험회사명() 증권번호() 해약반환금 (원)

☆ 파산신청 당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증권사본과 파산신청시의 해약반환금 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예금은 파산신청일 현재의 예금 잔고를 알 수 있는 자료로 예금통장 사본이나 예금잔고증명서를 첨부하고, 파산신청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의 유무에 불구하고 전부 기재하셔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발행하는 예상해약환급금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도 역시 보험사가 발행하는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4. 임차보증금

임차물건(월세보증금), 지급한 금액 (5,000,000원), 반환금 (5,000,000 원)

☆ 반환금란에는 파산신청시에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명도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예상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파산신청시까지 연체된 차임이나 임대인에게 임대차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잔액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인데 6개월 연체되었으면 임차보증금의 지급한 금액란에 1천만원을 기재하고 반환금 란에 820만원을 기재합니다.

5. 대여금

채무자명() 채권금액 (원) 회수가능금액 (원)

채무자명() 채권금액 (원) 회수가능금액 (원)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6. 매출금(개인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분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 채권)

채무자명() 채권금액 (원) 회수가능금액 (원)

채무자명() 채권금액 (원) 회수가능금액 (원)

☆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 잔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대여금이나 매출금의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회수가 불가능한 이유를 자세히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시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외국에 이민을 갔다든가 채무자가 부도가 났다든가 하는 등의 사실을 기재하시고 그 소명 자료로는 말소주민등록등본이나 부동산에 관한 자료, 예컨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음을 나타내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채무자의 부동사실을 아는 사람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7. 퇴직금

근무처명() 퇴직금예상액 (원)

☆ 파산신청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예상액(퇴직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을 기재한 사용자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만일 퇴직금재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차용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파산신청 당시에 직장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있을 수 있는데, 퇴직금 중 1/2은 파산재단에 속하여 파산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재원이 되므로 퇴직금 예상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파산선고 전에 미리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으시게 되면 이렇게 지급받은 퇴직금을 전액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퇴직금 전액을 파산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8. 부동산(토지와 건물)

종류(토지·건물) 소재지 () 시 가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종류(토지·건물) 소재지 () 시 가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하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의 부채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고 그 부동산이 상당한 가치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정식의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서 실제로는 재산가치가 없음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부동산 소재지 인근의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시가 확인서나 인터넷상의 거래시세자료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유주택을 임대하신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을 알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여부, 임차인의 주민등록전입여부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9.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한다)

차종 및 연식(세피아) 등록번호(서울54구 0000) 시가 (700,000 원)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다.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원부 을구까지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하고, 시가증명자료로는 인터넷 상의 중고거래시세자료를 출력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중에서 채무자와 동거 친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경형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채무자 또는 동거 친족의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경형자동차는 배기량 800CC미만의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를 말합니다.

10.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요 동산(주식, 회원권, 특허권, 귀금속, 미술품 등)

품목명()	시가 (원)
품목명()	시가 (원)

11. 최근 2년간 처분한 1,000만원 이상의 재산

- ☆ 처분의 시기, 대가 및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처분에는 보험의 해약, 정기예금 등의 해약, 퇴직에 따른 퇴직금수령 등도 포함합니다.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다음의 12항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히 부동산이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과 처분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에 관하여 처분시기, 대가 및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영수증, 매매대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하여 일부 채권자에게만 지급하였거나 매매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편파변제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여 면책이 불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처분경위와 매각대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자세히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12.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 ☆ 임대차계약서사본과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3.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

☆ 분여한 재산과 그 시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분여한 재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최근 2년 이내의 임차보증금 수령사실이나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 사실 등도 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되는 것이므로 그 내역을 자세히 밝히셔야 합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적법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혼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었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14.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년 월 일 부·모 _____의 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상황

- ①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
 - ② 신청인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모두 취득하였음
 - ③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하였음
- 주된 상속재산과 그 처분의 경과

☆ ② 또는 ③항을 선택한 분은 주된 상속재산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②항을 선택한 분은 다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부동산인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 ③항을 선택한 분으로 상속한 주된 재산을 이미 처분한 분은 그 처분의 경과와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

1. 현재의 직업【자영, 고용, 무직】

업종 또는 직업(제조업) 직장 또는 회사명 (□□실업)
 지위 (일용직) 취직 시기 (2004년 12월)

2. 수입의 상황(신청인의 월수입 합계 1,500,000 원)

자영수입(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월급여 (1,500,000원) →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연금 (원) →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원) →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기타 (원) →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3. 가족·동거인의 상황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령	동거여부	직업	월수입
김 ○ ○	처	41세	(동거) 별거	무	무
총 ○ 일	자	13세	(동거) 별거	무	무
총 ○ 호	자	11세	(동거) 별거	무	무
		세	동거·별거		원
		세	동거·별거		원
		세	동거·별거		원

☆ 가족·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2항과 마찬가지로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현재의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수입이나 급여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수입이나 급여가 있다면 현재의 직업란에 일용노동 또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하고 동거 유무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4. 주거의 상황

거주를 시작한 시점 (2004년 12월 2일)

거주관계 : 아래 ① - ④ 중 선택 (①)

① 임대 주택(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한 경우 포함)

② 사택 또는 기숙사

③ 신청인 소유의 주택

④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⑤ 친족 이외의 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⑥ 기타 ()

①, ④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 (500,000 원) 임대보증금 (5,000,000 원)

연체액 (원)

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인인 경우라면 임차인 성명 ()

②, ④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소유자 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 ① 또는 ④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또는 ④항을 선택한 분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② 또는 ④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주거상황란에는 자신 소유인지 임차인지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친척이나 친구가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친족 이외의 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임차주택이나 사택, 기숙사 등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연체차임을 꼭 기재하시고, 친척이 아닌 지인의 주택이나 지인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거기에 거주하시게 된 경위를 자세히 밝혀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5.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

소득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주민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재산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의료보험료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국민연금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자동차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기타 세금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양식 1-6】 가계수지표(2006. 4. 월분)

수입		지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급여 또는 자영수입	신청인	1,500,000원	주거비(임대료, 관리비 등)	500,000원
	배우자	원	식비(외식비 포함)	300,000원
	기타()	원	교육비	100,000원
연금	신청인	원	전기·가스·수도료	90,000원
	배우자	원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100,000원
	기타()	원	파복비	원
생활보호	원	의료비	350,000원	
기타	원	기타(전화요금)	60,000원	
수입합계	1,500,000원	지출합계	1,500,000원	

□ 가계수지표는 파산신청일이 속한 전달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월수입과 월지출의 항목과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6. 3.에 파산신청을 하신다면 2005. 2.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계수지표는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가계를 같이하는 모든 사람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항목별로 적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과다한 지출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란에 많은 지출금액을 적으셔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출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남는 금액의 용도라든지 모자라는 금액의 출처를 밟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상 담당판사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편철되어 있는 것에 익숙합니다. 즉 1장짜리의 신청서 양식 바로 뒤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서를 첨부합니다. 다음에 진술서를 구성하는 ①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 ②재산목록 ③현재의 생활상황 ④가계수지표의 4가지 서면을 차례대로 편철하고 각 서면의 진술한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는 가계수지표 다음부터 진술한 내용 순서대로 편철하면 됩니다. 제출할 소명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각 소명자료에 부전지로 제목을 달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별지1] 채무가 증대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부모님 술하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을 마치고 학사 장교로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1990년 6월에 전역을 하여 □□보험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1991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1992년도에 첫째 아이를, 1994년도에는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중 1995년에 첫째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빼소니로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고, 아이는 뇌출혈로 뇌성마비 증상이 나타나 몸을 혼자 힘으로 가누질 못했습니다. 첫째아이를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시키면서 매달 첫째아이에게 들어가는 병원비만 약 35만원 정도였습니다.

직장생활 만 10년차인 2000년 5월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첫 째아이는 재활 병원에 치료를 다녀야 했고 병원 내 유치원에 입학하여 매일 통학을 시켜야 했습니다. 7월 당시 저희가 살고 있던 금천구 00동에서 가까운 곳에 보증금 7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주고 음식점을 임차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2001년 7월경 건물 주인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음식점건물을 비워주고, 같은 동네에서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란 학교 선배와 시장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분석도 하여 9월경에 00동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권리금 1천만원, 보증금 9천만원, 월세는 500만원 기간은 3년으로 계약을 하여 선배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03년 2월경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동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제가 혼자 가게를 맡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선배가 투자한 6,000만원은 본인이 살던 주택전세보증금을 빼서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세에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씩 주는 00동 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저는 직원 3명과 함께 열심히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인근에 경쟁음식점이 들어서고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매달 적자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8월경 어떡해서든지 음식점을 정상화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고 주력메뉴를 변경하면서 □□카드와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은 계속해

서 적자를 내며 직원들의 급여와 가게 월세와 물건 값이 계속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줄었고 저는 주변사람의 소개로 비싼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려 카드 돌려 막기를 하였습니다. 채무는 눈 깜짝할 사이에 크게 늘어나버렸고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음식점을 청분하려 했지만 매수자가 없었고 결국 3년 만인 2004년 11월에서야 밀린 임금과 월세로 권리금과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시설비도 회수하지 못한 채 음식점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2004년 11월경 음식점을 청분하고도 거래처 물품대금과 시설비 등 약 1,300만원정도 빚이 남아 주택임차보증금 2,000만원 중 1,300만원은 위 채무를 갚고 200여만원은 이사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하고 저희 네 식구는 임차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직장을 구하러 밤낮으로 뛰어 다녔으나 직장은 구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어려운 환경을 알고 있는 주변 친구의 소개로 공장에서 일용직 일을 하고 있으나, 첫째 아이는 1주일에 2회 이상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아야하는데 한 달에 병원비만 약 3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첫째 아이는 몸조차도 가누지 못 하기 때문에 아내가 항상 곁에서 보살펴야 합니다. 어린 두 아이와 아내가 저로 인해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무력함을 느낄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별지2]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12월부터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재기하려고 해보았으나 2005년 2월부터는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연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의 잦은 전화독촉과 협박에 아내와 아이들은 전화를 받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채무에 짓눌려 아침에 눈 또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저의 무능력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죽고 싶은 마음뿐이나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을 생각하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월수입 150만원으로는 계속적으로 병원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뇌성마비 1급 지체장애인인 첫째 아이의 매달 35만원 정도하는 치료비가 너무 버거워 염치 불구하고 친지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 처지가 한스러워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론 세상을 등 질 생각도 했으나 저마저 며난다면 의지할 곳 없이 버려진 두 아이를 생각하면 이도 저도 못하고 자체으로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바로알고 당당히 대응하자! 31)

※ 참고 <법 제2조 제10호>

“채권추심업무”라 함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32) 발췌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제26조(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업자외의 자는 제5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6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8.28)

1. 허위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료·조회료·채권추심료 또는 수수료 등의 최고한도보다 많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

31) 본 자료는 다음까지 '신불자클럽', '면책자클럽'의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32) 채권추심업자의 부당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있다.

5.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소재탐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정보원·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7.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개정 2001.3.28)
8. 신용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신용평가로 당해 유가증권의 투자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일 (신설 2001.3.28)

제32조(벌칙)

- ① 제26조제7호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13, 1999.1.29, 2000.1.21)
8. 제26조의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7호나목 내지 하목 또는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개정 2001.3.28)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의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개정 2001.3.28)

7. 제26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불법추심이란

□ 폭행이란 채무자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함

욕설, 고함, 웃통을 벗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손으로 밀치는 행위, 때릴 듯이 겁을 주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문신이나 흉터를 보여주는 행위 등이 모두 폭행에 해당된다.

협박이란 채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예:"직장에 알리겠다", "가족들이 무사할 줄 아느냐", "남편에게 알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처자식이 걱정되지도 않느냐", "밤길을 조심해라" 등이 모두 협박에 해당된다.)

채권자에게 고소할 권한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의 수단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미리 작성된 고소장을 보여주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접수시키겠다"는 말을 해도 채무자가 외포심을 느꼈을 정도라면 협박죄에 해당된다.

폭행/ 협박이 야간에 이루어지거나, 2인이상 합동하여 이루어지거나, 흥기소지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때에는 형법 제26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된다.

□ 채무자에게 위계/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위계란 침묵, 거짓말, 유혹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지위, 권세, 실력, 수적 우세 등으로 채무자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일체의 실력행사를 위계한 한다.

채권자가 법원 집행관이라 사칭하고 집에 들어와 재산조사를 한 경우 채무자에게 위계를 행사한 행위가 됨은 물론 공무원자격사칭죄에도 해당되고 채권자가 "카드사용내역에 관하여 조사할 내용이 있으니 연락주기바람 -사고조사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위계에 해당된다. 또한 채권자가 회사앞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집앞에 기다리고 있는 행위 등도 모두 위력에 해당된다.

□ 채무자에게 창피를 주는 행위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보증인, 가족, 친척, 동거인, 애인, 친구, 이웃, 직장동료, 직장상사 등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려 부담을 주거나 채무자 주변사람들에게 알린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범죄행위가 된다.

채권자가 채무자 집 대문에 큰 글씨로 “법적조치 착수 통보서”라고 쓰여진 종이를 공개적으로 붙여놓고 간 경우 창피를 주는 행위에 해당됨은 물론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된다.

□ 채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의 동거인, 직장동료, 직장상사 등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범죄행위가 된다.

9월1일부터 시행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1) 엽서를 이용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2) 채무자외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3)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할 경우에는 5백만 원~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조항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1)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추심위임) 받은 자의,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채권추심 금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추심위임) 받은 자의,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채권추심이 금지(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되었다.

□ 심야방문/ 사생활침해 행위

채권자가 심야에 집이나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구, 애인, 가족, 직장상사, 직장동료 등 관계인들에 대한 사생활/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나 시도때도 없이 전화를 하는 경우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된다.

□ 채무자/ 그 주변사람들에게 공포심, 불안감 유발행위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친구, 애인, 직장동료, 직장상사 등 주변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이다. (신용정보의이 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제7호라목)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친구, 애인, 직장동료, 직장상사 등 주변사람들에게 말, 문자, 음향, 영상,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다.

□ 채무자 또는 그의 주변사람을 방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친구, 애인, 직장동료, 직장상사 등 주변사람을 방문하는 행위로 위법이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제7호나목)

□ 주거침입 행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전 승낙없이 주택, 사무실 등에 방문한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 주택의 경우 굳이 방이 아니더라도 대문안에만 들어서도 침입으로 본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영업소, 공장 등도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되어 주거침입에 해당된다.

□ 퇴거불응 행위

채권자가 재산조사 등의 명분으로 채무자의 사전승낙을 받고 채무자의 주택, 사무실을 방문하였더라도 채무자로부터 다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주택, 사무실을 나가야하고 채무자로부터 3회 이상 퇴거요구를 받고도 돌아가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형법 제319조 제2항)

□ 주거/신체 수색 행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전 승낙없이 채무자의 주택, 사무실 등을 수색할 경우에는 주거수색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전 승낙없이 채무자 신체를 수색할 경우 신체수색죄에 해당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답시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이나 사무실을 조사하는 경우 역시 주거수색죄에 해당된다. 채권자가 아이들만 있는 집에 들어와 여기저기 둘러보고 가는 행위도 주거수색죄에 해당된다.

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을 수색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 명예훼손 행위

사무실, 길거리 등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과다채무, 신용불량 등의 사실을 적시하

여 채무자 명예를 실추시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채무자의 직장동료, 친척, 보증인 등 채무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채무자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 창피를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법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제32조 제2항 8호의 적용을 받는다.

채권자가 채무자 집 대문에 큰글씨로 “법적조치 착수 통보서”라고 쓰여진 종이를 공개적으로 붙여놓고 갔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진실한 내용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내용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형법 제307조)

□ 모욕행위

사무실, 길거리 등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채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창피스러운 내용의 말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을 경우 모욕죄에 해당된다.

□ 강요행위

채권자가 폭행/ 협박으로 가족, 친구, 애인 등에게 대신 빚을 갚게 하거나 연대보증을 서게 하면 강요죄에 해당된다.

채권자가 부인의 채무에 관한 일로 남편직장에 전화하여 대신 빚을 갚게 한 경우 등 폭행 /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형법 제324조)

□ 공무원자격사칭 행위

채권자가 법원 집행관을 사칭하여 집에 들어와 재산조사를 한 경우에 본죄에 해당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형법 제118조)

□ 행정질서벌/ 손해배상책임

채권자가 위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신용정보회사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정보업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당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6호)

채권자가 위 불법추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당해 신용정보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8조)

□ 사채업자의 미등록 대부업 행위

사채업자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행위를 하거나,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세추징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됨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19조, 제13조

□ 사채업자의 법정초과이자 수수행위

사채업자가 채무자로부터 3,000만원 이하의 대출에 있어서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시행령 제5조)

3. 불법채권추심 이렇게 대응하자!

먼저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들에 대해 법에서 허용한 테두리 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초본상의 주소, 호적등본, 재산조사내용 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재산조사의 경우 비용이 30만원 가량 들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1) 반드시 녹취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통화내용등을 반드시 녹취하십시오. 추심직원들 스스로가 통화를 하다 보면 앞서 기술한 내용을 어기고 전화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중하게 “상환해 주십시오”라고만 하는 추심직원은 없으니까요.

당연히 여러분과의 통화에서 때로는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때론 온갖 회유도 하겠지요. 모두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증거보존의 습관을 가집니다.

추심직원의 방문일지, 추심 행태, 증인등을 확보하는 일을 반드시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의 접촉내용들을 모두 기록합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과의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력 자체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적 증거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3) 형사고소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권채무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사건들을 가급적 형사사건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빠른 시간안에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시 앞서 기술한 내용들을 토대로 협박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개인정보누출등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보십시오.

그들의 불법은 당연히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형사사건화 되면 그만큼 여러분이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일부 채무자 중에는 어짜피 자신이 채무를 지고 있고 채권자측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으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4)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제기는 지옥같은 생활에서 햅살 따사로운 양지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반드시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5) 민원제기방법

첫째, 앞서 수집한 불법적인 추심행위 자료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사를 청구하는 정식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금감위는 금융과 관련하여 최고의 감독기관입니다.

금융업계는 금감위의 통제를 받아야하고 금감위의 정식민원은 산하기관에 해명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해명해야 하고 그들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 추심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감위에 제기하십시오.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알려준 직원, 그 소속 관공서, 추심직원, 추심직원의 소속 회사 모두 알아야 합니다. 현대에는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해당 직원 뿐만 아니라 소속회사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대부분 법률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34조에도 양벌규정이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셋째, 민원은 금감위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기관 (검찰, 방송국,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등등)에 민원을 제기하되 가급적 여러분에 걸쳐서 하십시오.

넷째, 추심하고 있는 회사의 본사 홈페이지에도 반드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가장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공론화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민원해결을 원하는 것은 민원을 발생시킨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같은 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호회등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십시오. 서로 상대회사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며 민원을 제기할 때 같이 모여 동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민원제기 사이트

금융감독원

http://minwon.fss.or.kr/kor/mw/jsu/inqui/inqui_man/inqui_m_index.jsp?menu=mwo040000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센터)

http://sob.fss.or.kr/kor/mw/sin/simfin_e.jsp?gubun=b&menu=mwo080200

청와대 신문고

<http://www.epeople.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service/egov_07.php